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07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3.

발 의 자:김용민·이수진·오영환

김승원 · 송재호 · 임오경

신정훈 · 양경숙 · 유정주

장경태 · 정춘숙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인신매매·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 관련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을 개정하고자 함.

외국인이 인신매매·착취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, 강제퇴거 대상 또는 보호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.

'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'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, 성폭력 피해자, 아동학대 피해자 및 인신매매·착취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고충을 심의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5,

제42조 및 제62조의2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인신매매·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91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5(인신매매·착취 피해자에 대한 특칙) ① 법무부장관은 「인신매매·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인신매매·착취 피해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.

제5장제2절에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(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)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법무부 및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(이하 "체류심의위원회"이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가정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
- 2.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3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
- 3.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4에 따라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아동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 3호의 보호자(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)
- 4. 인신매매·착취 피해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5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및 「인신매매·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외국인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호 일시해제와 강제퇴거집행 유예를 신청한 외국인
- 6.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피해 외국인 등 고충을 신청한 외국인
- ② 체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체류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

- 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법무부 소속 공무원
- 2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-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4. 교수, 종교인, 시민단체의 구성원 등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 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-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체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-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2조의2(강제퇴거집행 유예 등)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 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른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강제퇴거집행 유예 또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	제25조의5(인신매매·착취 피해
		자에 대한 특칙) ① 법무부장관
		은 「인신매매·착취방지와 피
		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3
		조의 인신매매·착취 피해를 이
		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
		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
		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
		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
		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
		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
		<u>가할 수 있다.</u>
		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	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
		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
		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
		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	제42조(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)
		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
		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
		장이나 강제퇴거집행 유예 신청
		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
		관 소속으로 법무부 및 지방출
		<u>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체</u>

- 류심의위원회(이하 "체류심의 위원회"이라 한다)를 둔다.
- 1. 가정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2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외국인
- 2.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 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3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
- 3.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 조의4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한 외국인 아동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보호자(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)
- 4. 인신매매·착취 피해를 이유 로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

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제25조의5에 따라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 및 「인신매매・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외국인

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 하는 외국인으로서 보호 일시 해제와 강제퇴거집행 유예를 신청한 외국인
- 6. 그 밖에 법무부렁으로 정하 는 범죄의 피해 외국인 등 고 충을 신청한 외국인
- ② 체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체류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법무부 소속 공무원
- 2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-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. 교수, 종교인, 시민단체의 구성원 등 외국인 인권보장 및

권익증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체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무부렁으로 정한다.

제62조의2(강제퇴거집행 유예 등)
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른 외국인이 법원의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강제퇴거집행 유예 또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